C - 113 - 2020

- (나) 순간풍속 15m/s 초과 시: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
- (다) 순간풍속 30m/s 초과 시: 이탈방지장치 작동 및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
- (3) 건설현장에서의 넘어짐, 떨어짐,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(가)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, 안전표지판, 적재물 등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외 부작업 금지
 - (나) 외부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결속 및 고정 상태 점검
 - (다) 갱폼 및 수직보호망 등이 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할 것.
 - (라) 가설사무실 지붕 등의 고정상태 및 비상 시 피난계획 및 조치계획 수립

4.2 화재 예방

4.2.1 일반사항

- (1)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 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·기계·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(2)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우레탄 뿜칠 작업이 종 료된 작업장에서의 화기작업은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- (3)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
 - (나)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·보관 현황 파악
 - (다)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
 - (라)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 불꽃,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
 - (마) 인화성 액체의 증기와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
 - (바)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